

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심기보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1년 3월 3일

○ 회부일자 : 2021년 3월 5일

3. 제안이유

○ 「실용신안법」 제13조제2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,

○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각종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관련법률 인용 조항 개정(안 제10조)

－ 「실용신안법」 제13조제2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단서조항 삭제.

○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－ 특허법 → 「특허법」 (안 제2조제3호나목)

- 2인 → 2명 (안 제6조)
- 금액의 100분에 50에 해당하는 금액 → 금액의 100분의 50 (제8조)

5. 검토의견

- 이번 개정조례안은 「실용신안법」이 2014년에 개정됨에 따라 안 제10조를 수정하고, 어려운 법령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10조제2항
 - 조례의 관련 법령인 「실용신안법」 제13조제2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고,
 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
 - 안 제2조제3호나목에서 ‘특허법’ → ‘「특허법」’으로,
 - 안 제6조에서 ‘2인’ → ‘2명’으로,
 - 안 제8조제1항중 ‘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’ → ‘50을 처분보상금으로’ 같은조 제2항 중 ‘50에 해당하는 금액’ → ‘50’으로 수정하여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음.

붙임: 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